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24 발의연월일: 2025. 5. 8.

발 의 자:배준영·강선영·김교흥

정일영 • 윤상현 • 허종식

박충권 • 박준태 • 조지연

유용원 • 이인선 • 모경종

김 건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,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, 제7조제5항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425호),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7호), 「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 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6호), 「유류오 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3호) 및 「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42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방법원 또는 지원"을 "해사법원·지방법원 또는 각 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「법원조직법」 제28조의8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은 해사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해사민사사건 관할 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관할법원) ① 다음 각 호의	제7조(관할법원) ①		
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			
지정한 <u>지방법원 또는 지원</u> (이	<u>해사법원·지</u>		
하 "법원"이라 한다)이, 그 지	<u>방법원 또는 각 지원</u>		
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			
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, 중			
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			
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			
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			
이,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			
없는 경우에는 거소(居所)를 관			
할하는 법원이, 거소도 알 수			
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			
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			
법원이 관할한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		
	「법원조직법」 제28조의8제1		
	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사민		
	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	
	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은		
	해사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.		